

문 18.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 계획은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집행 계획은 중앙관서의 장이 기본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시·도계획은 시·도지사가 집행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시·군·구 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시·군·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한다.
- ㄴ. 중대 규모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없다.
- ㄷ.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로 편성하고, 연대·대대·중대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 ㄹ. 소속 기관장이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문서 송수신 체계에 따라 보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문 22.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으나,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해서는 무장을 할 수 없다.
- ② 군부대의 장이 경찰서장에게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군부대의 장이다.
- ③ 예비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의 임무를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 ④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에 있어, 예비군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23. 2020. 3. 12. A지역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였다.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해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수탁경찰서장 甲은 주민의 피난 명령 및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들의 재산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甲이 A지역 주민의 재산을 긴급하게 제거하기 위해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주민에게 통지 및 게시하였더라도, 재산을 제거당하는 본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ㄴ. 甲이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지휘 계통에 따라 그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ㄷ. 甲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A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乙을 검문하여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乙이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ㄹ. 재산을 제거당하여 손실을 입은 주민 丙이 보상금 지급을 2020. 4. 7. 신청하였고, 며칠 후 보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丙은 2020. 5. 7.까지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문 24.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지역예비군으로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되었다.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훈련 중이던 甲은 2017. 10. 1.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위해 30개월 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줄곧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甲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군인연금법」상 甲의 전역 당시 계급 및 호봉과 같은 현역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보상금은 6,000만 원이고, 병(兵)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장애보상금은 5,000만 원이다.

- ① 甲은 6,000만 원을 장애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② 甲은 장애보상금 5,000만 원뿐만 아니라 휴업 보상금을 재해보상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다.
- ③ 甲은 24개월을 한도로 하여 결정된 휴업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④ 甲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그 상이(傷痍)로 인해 사망한 경우, 甲이 받는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문 25.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이던 A군부대 소속 예비군대원 甲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였다. 그런데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인 B병원(병원장 乙)에서 치료를 받았고, 甲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고 퇴원하였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乙은 A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甲에 대한 치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는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甲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 ④ 甲이 퇴원 후 부상 후유증으로 3일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乙은 A군부대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甲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